

지역사회 인재의 국제협력 역량강화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상생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각 기관은 지역인재의 국제협력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상생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국제협력사업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상생기반 마련
2. 지역사회 인재의 국제 역량강화를 위한 각 기관별 글로벌 행사 참여기회 제공
3. 기타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기관별 역할)

1. 각 기관은 상호협의 하에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2. 행사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결과를 공유하며, 행사 참여기관은 참석대상의 선발·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제4조(협약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본 업무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사업수행에 소요될 비용의 부담 등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참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이행·교류·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를 이 업무협약서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2023. 11. 4.까지 유효하며, 본 협약 유효 기간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업무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업무협약 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에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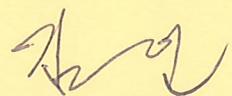
제7조(종결·해지) 본 업무협약을 종결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참여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협력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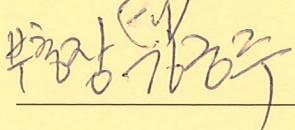
2020년 11월 5일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센 터 장
김 인



총 장
반 선 섭



건강보험연구원장
이 용 갑

